



Los Angeles Office:
3435 Wilshire Blvd. Suite 1110
Los Angeles, CA 90010 (Equitable Building)
Tel: (213) 385-IMIN (4646)
Fax: (213) 385-4040
E-mail: imin@iminusa.net

Irvine Office:
20 Corporate Park. Suite 330
Irvine, CA 92606
(Between Jamboree and Beckman)
Tel: (949) 551-IMIN (4646)
Website: www.iminusa.net

Newsletter APRIL 2020

<이민중단 행정명령>

4월 2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중단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.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국 이민을 **60 일** 동안 중단시킨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, 미국 밖에 체류하시는 분들께서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기 전 발급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미국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행정명령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.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의료관련 종사자, 배우자, 그리고 21 세 미만 자녀
2. 투자이민 신청자
3.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, 그리고 21 세 미만 자녀
4. NIW 신청자

4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민중단 행정명령에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.

1. 시민권자의 부모, 21 세이상 자녀, 그리고 형제자매는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.
2. 비이민비자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취업비자 (H-1B)나 주재원 비자 (L1)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비이민비자 프로그램도 행정명령이 시작되고 30 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.
3. 현재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무비자 (ESTA)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
4.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, 신분 연장, 그리고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.
5. 영주권자는 미국입국에 제한이 없습니다.
6.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7. 이 행정명령은 60 일 이후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이번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자세한 규정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향후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Newsletter 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 (imin@iminusa.net)이나 전화 (213-385-4646)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